

□ 생활관운영규정 12조(입사자 준수사항 및 징계)에 의한 사생수칙

- 모든 입사생은 사생수칙 준수 및 면학질서 유지, 시설/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수칙에 위반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,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 및 생활관운영팀 직원, 생활관 자치회장, 동장, RC의 RA, 생활안전사감이 할 수 있다.
-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1년간 누적 관리되며, 누적벌점 정도에 따라 10점 이상 시 생활관장 지도, 20점 이상 시 학부모 및 지도교수 통보, 30점 이상 시 다음 정규학기 한 학기 퇴사, 50점 이상 시 다음 정규학기 두개 학기 퇴사, 70점 이상일 경우 영구퇴사 및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되며, 각각에 대하여 봉사활동이 부여된다.

[누적벌점 및 조치]

누적벌점	징계내용
10점 이상	매 5점당 생활관장이 정하는 교내 봉사 2시간
20점 이상	학부모 및 지도 교수 통보
30점 이상	다음 정규 학기 한 학기 퇴사
50점 이상	다음 정규 학기 두 학기 퇴사
70점 이상	즉시 영구퇴사 및 학생생활위원회 회부

※ 벌점 부과 및 집행은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. 30점 이상 벌점 부과 사생은 1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생활관운영위원회는 1개월 내에 재심의 해야 한다. 재심 요구 사생은 재심위원회 소집 시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출석 요구 불응 시 해당 벌점을 확정한다.

○ 위반수칙 및 벌점

위반 내용	최대벌점
1. 범죄 행위	70점
2. 이성 생활관 및 RC 이성 사용 층 무단출입 ⁽¹⁾	70점
3. 인화물질의 반입, 실화	60점
4. 개인 영리목적 행위	50점
5. 공용 비품의 고의적 파손, 외부 반출, 사유화	50점
6. 외부인(재학생 이외의 모든 사람) 출입 및 투숙 ⁽²⁾	40점
7. 생활관 건물 내 조리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취사	20점
8. 생활관 건물 내(옥상/계단/베란다 포함) 및 건물 1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	20점
9. 불허 전기용품의 반입 및 사용 ⁽¹⁾	20점
10.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	20점
11. 침실 내 벽지, 장판, 카펫, 타일 등의 설치 ⁽³⁾	20점
12. 무단 침실 변경 ⁽¹⁾	30점
13. 동물 사육 (곤충/어류 포함) ⁽¹⁾	20점
14. 입, 퇴사 절차 불이행 ⁽¹⁾	10점
15. 생활관장 및 생활관운영팀 직원 지시사항 불이행 (불법거주자 벌점부과)	10점
16. 규정을 벗어난 침실 구조 변경 ⁽¹⁾	5점
17. 생활관 자치회 및 동민회 자체 규정 위반 행위 ⁽³⁾	15점
18. 복도에 빨래 등의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생활관의 청결 및 안전한 관리에 반하는 행위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	25점
19. 생활관 지역 내에 학기당 10일 이상 주차하는 개인 차량의 교내 POVIS 미등록, 사생차량 등록증 미 부착 및 주차 질서 위반 행위 ⁽⁴⁾ (위반 시 견인 조치/견인비 미 입금 시 50점 추가 부과)	20점 (50점 추가)
20. 생활관 구역 내 생활관운영팀 미 허가 포교행위 및 포교규정 위반 행위 ⁽⁵⁾	20점
21.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위반 행위 ⁽⁶⁾	70점
22. 삭제(2013.9.1부)	30점
23. 생활관 사용료 미납 - 1회 미납 시: 경고 및 연속 미납 시의 후속조치 내용 고지 - 2회 미납 시: 생활관 출입통제(20점) ※ 분납자의 경우: 당해학기 잔액 일시불 징구/졸업까지 분납신청불허 - 3회 미납 시: 추가 벌점 10점 & 1개 학기 퇴사 (추가 10점)	20점 (10점 추가)

- (1) 개인 또는 그룹별 사전요청이 있을 시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별점부과 면제 가능한 사항.
- (2) 퇴사자/휴학생 등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생활관운영팀 허가 하에 1박 가능
- (3) 동민회 재적 2/3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 후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매학기 단위로 별점 부과 예외 또는 자체 관리가 동별로 가능한 사항.
- (4) 생활관 구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'차량등록증사본'을 지참하여 대학에 등록해야 함.
(신규차량의 경우는 구입 후 10일 이내 등록)
 - 대학이 발행한 등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.
 -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생활관운영팀에서 임의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, 견인에 발생한 비용은 위반 차량 차주 부담으로 한다.(발생 비용 미정산시 50점 추가 별점 부과)
 - 견인 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대학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(5) 생활관 구역 내에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는 사전에 생활관운영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일정, 인원, 방식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. 특히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포교의 경우 희망 사생호실 침실 앞 또는 해당 생활관 현관에 포교활동 4일 전까지 A3용지 이상 크기의 활동계획서를 게시해야 한다.
- (6) RC에 대해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부가적인 사생수칙은 생활관장 심의 후 일반 사생수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□ 기타 규칙

- 사생 간 무단 침실 변경 시 다음과 같이 별점을 차등 부과한다.
 - 다른 사생을 강제하여 침실을 변경하도록 한 경우(30점)
 - 다른 사생에 의해 강제로 침실을 변경 당했을 경우(5점)
 - 그 외의 경우(각 20점)
- 침실 구조 변경 시 아래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5점의 별점을 부과 한다.
 -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문이 90도 이상 열릴 수 있어야 함.
 - 문 앞에서 창문의 여닫이 부분이 바로 보여야 함
 -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왔을 때 수납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.
 - 냉/난방기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 - 퇴사 시 침실 비품을 표준 구조로 원위치 해야 하며, 생활관운영팀 또는 자치회의 점검을 받아야 함.
 - 위 사항에 대한 미 이행, 미 조치 시 별점 10점 추가 부과.
 - 신규 입사자는 기존 사용 사생에게 비품 '표준구조'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.

□ 생활점검

모든 생활관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해 방학기간 중에도 생활관운영팀의 수시점검이 진행되며, 생활관자치회와 함께 정기점검, 학기말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.

□ 전열기구

전열 기구는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, 대학에서 승인한 전열기구만 사용해야 한다. 허용 및 불허용 기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고, 불허된 기구라 하더라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생활관장의 사전 심사 및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구 분	품 목		비 고
	허용	불허용	
난방기기	-	전기담요/전기장판	
	-	전기히터/팬히터	
취사기기	커피포트	라면 포트	
	커피메이커 (드립 퍼)	-	
	토스트/요구르팅	-	
	-	전자렌지	휴게실 비치 공동사용
	-	전기밥솥/전기후라이팬	
	-	가스버너/쿠커	
	-	핫플레이트	RC기숙사 라운지, 간식실 비치 공동 사용
음향기기	비디오/TV/오디오	-	
	전자악기	-	
학습기기	컴퓨터	-	
	프린터	-	
	전기스텐드	-	
기타	선풍기	USB 선풍기	규격품사용
	냉장고	-	120L 이하
	청소기	-	
	드라이어	-	
	가습기	가열식가습기	
	안전멀티탭 (익스텐트코드)	-	<u>각 실당 안전 전류량 3암페어 이내</u> (차단스위치 있는 것)
	-	다리미	휴게실 비치 공동사용 (자치회에서 구비)
	-	세탁기	세탁실 비치 공동사용